

라도 내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쓸 데 없는 충성경쟁으로 오늘 이 본會議場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 본會議場을 파행으로 몰고 간 責任은 전적으로 議會 指導部の 責任입니다.

(場內 騷亂)

조용히 해요. 상대방의 의혹을 제거하려거든 자기 눈 속의 대들보부터 제거하고 똑바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신성한 서울시議會를 政治場化하는데 앞장 서지 마십시오.

더욱이 決議案 內容을 보면 金泳三 大統領 就任 以後 청교도적 신념으로 推進한 一連의 改革作業이 人氣迎함에 의해 명분이 없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議會에서 論議될 事項이 아니라고 봅니다.

地方議會에서 밀어붙이기식 決議案 通過로 問題가 하나 같이 解決되는 것은 아닙니다. 議長을 비롯한 運營委員長에게 本議員은 이 決議案 上程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성한 서울시議會에서만은 政爭을 말자고 했습니다. 決議案 上程이 國民회의에 득이 될 것이 없다고까지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 지경까지 오고 말았고, 議長과 運營委員長은 議會 파행운영의 責任을 지고 辭退할 것을 勸告합니다. 사퇴치 않을 시 解任決議案을 提出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金聖浩議員으로부터 反對하신다는 發言이 있었습니다.

贊成討論하실 議員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상으로 討論을 終結하고 表決할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第14代大統領選舉支援資金公開促求決議案을 贊成하시는 분은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 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를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反對하시는 議員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 表決)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席議員 94名 중 贊成 77名, 反對 4名, 棄權 13名으로 第14代大統領選舉支援資金公開促求決議案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照)

결 의 안

서울특별시의회는 1991.7.8 제3대 지방의회 개원과 '95.7.12 제4대 지방의회 개원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한정사에 지방자치의 정착을 이룩하고, 우리 의원들의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진정으로 갈망하면서 서울특별시 1,100만 시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우리 144명의 시의원은 혼신의 힘을 발휘하면서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엄숙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헌법 제66조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보전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고, 헌법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추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은 '93.2.25자로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이후 지난 3년 동안

- 청와대 주변 안가 철거
-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공직자 재산공개 실시
- 군 사조직 척결과 정보기관 쇄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추진법 제정
- 금융실명제 실시

05·18특별법 제정과 12·12사태와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전직 대통령(전두환씨, 노태우씨)의 구속과 역사적 사법심판 실시 등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분야의 획기적인 개혁

과 국가발전에 개혁 정책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한편 대부분 개혁이 명분과 목표의 정당성에 비하여 동기의 진실성을 의심받고 정략적 고려의 흔적이거나 극적효과와 인기에 집착한 갑작소의 즉흥적 결단 등 국민의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최근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망언에 대한 확고한 의지 불표명과 불법을 자행하여 전 국민을 격노케 한 노태우씨로부터 받았다고 전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제14대 대통령대선지원자금을 비공개하여 국민들 마음에는 집권여당 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우려와 개탄이 증폭되어 폭풍전야와 같은 분노가 제15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충천되어 가고 있으며, 대통령의 헌법 준수정신이 희박한 듯한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천박한 서울특별시민의 대표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대통령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하여 도덕성이 있는 책임자로서 제14대 대선지원자금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정신에 따라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회균등 보장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여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96.4.11. 제15대 총선에 즈음하여 전 국민에게 선거의 중요성 및 국민의 무 사함을 다음과 같이 내무부, 법무부장관 공동 명의로 1996.3.20.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요 지

- ①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선거,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의 실현에 노력
- ② 선거관리업무의 엄정한 집행과 합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하여 최대한 보장
- ③ 공명선거를 해치는 선거법위반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고 선거분위기를 튼튼

사회안녕과 법질서 문란행위는 엄중의법 조치해 나가겠다.

국민에게 깨끗한 정치발전을 위한 부정선거 방지에 대한 협조와 당부를 즐기차게 철저히 하면서도 불법을 자행한 노태우 전직대통령으로부터 대선지원자금을 받았다고 의혹을 받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제14대 대통령 대선지원자금에 대하여 불분명한 입장을 하시고 있음은 헌정정치 수호를 위하여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는 바입니다.

국민은 공직자의 개혁정신 추진과 준법정신 실천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의무중 중요사항으로 헌법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의 책무를, 헌법 제46조에서는 국회의원의 책무(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법령준수와 성실한 직무수행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법의 정신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제14대 대선지원자금에 대한 대통령의 공개 선언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정치자금은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선거법 제80조에서는 “선거비용의 제한액에 대하여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88조에서는 선거비용 내용을 선거일후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자료에 의하면 제14대 대통령 선거비용제한금액은 36,700,787,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제14대 대통령후보자중 김영삼후보는 28,448,649,679원을 대선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김영삼대통령의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 실천 의지로 우리 앞에 실현될 전직대통령(전두환, 노태우)의 12·12사태 및 비자금조성과 사용 등에 관한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헌정사상 최초로 실현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재판을 엄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역사적 재판과정에서

<p>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3,000억원 대선지원금 수수하였다는 의혹(?)과 쓸만큼 주었다는 전직대통령 노태우씨의 아들 노재현씨 발언 등등</p>	<p>① 제14대 대통령선거지원자금 조성 과정과 모금한 대선 지원자금 총액을 공개하여 줄 것 ② 대통령선거지원자금 총액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선거비용 회계보고금액과 엄청난 차액이 있다고 하는 언론매체와 정당들의 주장에 대하여 집권당 대통령으로서 명명백백하게 대선지원자금 전모를 공개하여 주기를 촉구한다. ③ 제15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선지원자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한 부도덕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을 표명하여 주기를 촉구한다.</p>
<p>대선지원자금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감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정제한금액 및 사용선거 비용에 비하여 천문학적인 숫자의 차이가 있음에 당혹을 금할 수 없으며, 천백만 서울특별시민의 제14대 대선지원자금의 불법성에 대한 의혹심은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p> <p>'96.3.20. 국민일보 등 언론매체는 “쓸만큼 주었다”는 전직대통령 노태우씨 아들 노재현씨 발언과 “3,000억원 대선지원자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야당측의 주장이 있으며, 신한국당 이회창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대통령의 대선자금과 관련해 여당으로서도 사실을 규명한다는 입장에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p> <p>우리 나라는 UN활동강화와 OECD가입 등으로 세계 중심 국가로의 진입과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이룩하는데 전 국민의 총화적인 힘찬 약동이 요청되는 현실에서 대통령선거지원자금으로 인한 국민의 실망이 증폭되어 국력손실과 국정발전의 정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p> <p>모든 국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기획균등부와 공정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선출하는 사명감위에서 우리 나라는 건설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p> <p>“국가발전의 활동력의 근원은 변화와 개혁이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발전해야 된다”는 문민정부를 바라보면서, 천백만 서울특별시민의 대표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정신과 시의원의 의사를 집결하여 우리 나라 헌정사의 찬란한 정치 발전과 민족역사의식에 국민의 동참을 이룩하고, 민족사 발전을 위한 역사적, 시대적 소명의식에 따라 집권당과 대통령의 직책 성실수행과 도덕성을 기대하면서 다음 사항을 실천하여 주시기를 촉구 결의하는 바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결 의 사 항</p>	<p style="text-align: right;">1996.3.25.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문 일 권</p> <p>2. 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의件 (16時 03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特別委員會 活動結果 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p> <p>우리 市議會에서는 지난 8月 16日 第79回 臨時會에서 倫理特別委員會 等 6個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議員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동안 분야별로 市政發展에 많은 일을 推進하여 왔습니다.</p> <p>이에 따라 6個 特別委員會 中 倫理特別委員會,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 都市施設物安全點檢및災害對策特別委員會, 女性特別委員會와 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가 活動을 終了하고 그 結果를 報告하여 왔습니다.</p> <p>각 特別委員會別 活動結果報告는 이미 의석에 配付하여 드린 活動結果報告書로 같음하고자 하오니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特別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 여러분의 눈부신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p> <p>----- (參 照)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구성현황</p>